

# 13

## 금융서비스

### 제13장(금융서비스)의 구조

- 한·미 FTA상의 금융 분야는 제13장 본문, 제13장 부속서(총 4개) 및 부속서Ⅲ(금융서비스 유보)에 의해 규율
  - 부속서 13-가 : 국경간 무역
  - 부속서 13-나 : 구체적 약속
  - 부속서 13-다 : 금융서비스위원회
  - 부속서 13-라 :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 제13장 적용범위 (제13.1조)

- 제13장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의 요건(제13.1조제1항)
  - ① 상대국의 금융기관
  - ②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및 그 투자
  - ③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
- 제13장 적용 배제 사항(제13.1조제3항)

- 공적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수출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 다만, 제13장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서비스가 상업적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등과 경쟁하여 공급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제13장이 적용됨(제13.1조제3항).

▣ 또한, 제11장(투자) 및 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이 제13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 제13장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11장·제12장상의 일부 의무도 적용

- 제11장상 의무 중에서는 수용 및 보상, 송금,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가 적용되며,
  - ※ 그 중 수용 및 보상·송금·혜택의 부인·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제12장상 의무 중에서는 혜택의 부인(제12.11조)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지불 및 송금(제12.10조) 의무가 적용

〈 제13장에 통합되어 적용되는 11장·12장상 의무 〉

	11장상 의무	12장상 의무
ISD 대상이 되는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및 보상 (제11.6조)</li> <li>○ 송금 (제11.7조)</li> <li>○ 혜택의 부인 (제11.11조)</li> <li>○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11.13조)</li> </ul>	○ 없음
ISD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와 환경 (제11.1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의 부인 (제12.11조)</li> <li>○ 지불 및 송금 (제12.10조)*</li> </ul> * 단, 국경간금융서비스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의무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만

##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 제13.2조)
  -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종의 상황’ 에서 자국의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제13.3조)
  - ‘동종의 상황’ 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13.4조) 제한 조치 도입 금지
  -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 ㉠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 금지
      - ① 금융기관의 수,
      - ② 금융서비스 거래·자산의 총액,
      - ③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
      - ④ 자연인의 총 수
    - ㉡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SMBD, 제13.8조)

- ① 고위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의 국적 제한,
- ②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자국 거주 요건의 부과 금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허용범위 (제13.5조 및 부속서 13-가)**

□ 양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허용범위를 (1)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2)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부수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방하기로 합의

\* 예) 해상 보험, 상업적 항공 보험, 화물운송 보험 등

\*\* 예) 투자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보험계리, 손해사정 등

- 한·미 FTA에서는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분야를 제외한 여타 금융 서비스는 국경간 무역 허용 대상에서 제외

《 양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

분야		우리나라	미국
보험	(1) 해상·항공·우주보험	○	○
	(2) 수출입적하보험	○	○
	(3) 재보험 및 재재보험	○	○
	(4) 보험 중개·대리	(1)~(3) 관련 보험에 한정	전면 개방
	(5) 보험부수서비스*	○	○
은행 기타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	○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발효시점으로부터 2년 후 개방	즉시 개방
	(3)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	신용평가, 신용조회·조사 서비스 제외	전면 개방

\*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자문, 기업구조조정·전략수립 자문 등

## 신금융서비스 (제13.6조 및 제13장 서한 '신금융서비스')

### □ 허용 요건

-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타방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급 가능(제13장 서한 신금융서비스)
  - ※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
- ①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
- ② 추가적 입법행위 없이 신금융서비스가 당사국 국내법상 허용될 것
- ③ 해당 상대국의 금융기관이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할 것

### □ 적용 배제 사항

-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 당사국의 권한

-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 결정 가능
-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건별 인가제도 운용 가능
-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 적용 가능

## 금융건전성 제도의 도입 (제13.10조 제1~4항)

-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목적 조치를 도입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제13.10조제1항).
  -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 금융제도의 완전성·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
- 건전성 조치 외에도, 비차별적인 통화·신용·환율 정책, 비차별적 금융 관련 송금 제한 조치, 금융 사기 및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제13장의 예외가 됨을 확인(제13.10조 제2,3,4항)

## 자율규제기구 (제13.12조)

- 상대국 금융기관이 당사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 협회(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국의 관련 협회는 자국 또는 제3국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됨.

##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역외제공 (부속서 13-나 제1절 제4항)

-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문제는 당사국의 투자펀드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게 위탁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해외 운용위탁만 허용

- 원화표시자산 해외 운용위탁은 발효일 후 2년내에 재협의를 기로 함.

※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원화로 표시된 자산(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원화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외화로 표시된 자산(미국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외화자산 포트폴리오라 함.

##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및 소비자 보호

-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도록 규정함 (부속서 13-가 제6항나호, 부속서 13-나 제2절).
- 한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한다고 하여 금융정보의 생성·저장을 위한 IT설비, 금융 전산망 등 본질적 요소들의 해외이전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또,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 하에서 유예기간(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내)을 두고 개방(제13장 서한 정보의 이전).
  - ① 소비자 민감 정보 보호
  - ② 위탁받은 민감 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 ③ 해당 위탁 금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우리 금융 당국의 권한 확보
  - ④ 기술설비 위치 요건 등

##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의 위임” 허용 (부속서 13-나 제3절)

- 후선업무 기능이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인력채용·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①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 ②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 ③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 ④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 ⑤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 ⑥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 양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자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일부 후선업무 기능을 본점에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

###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방법 (부속서13-나 제4절)

-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행정지도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도 가능
- 구두 행정지도가 있는 후 이해관계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함.
- 또한,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함.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부속서 13-나 제6절)

- 한·미 FTA에서 양국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 등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
  - ※ 한·미 FTA상 합의내용과는 별개로, 농협 보험 부문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여타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 적용 및 금융위 감독을 받음.

### 양국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부속서13-나 제7절)

□ 양국은 금융감독기관 사이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참고로, 2010년 6월에 우리 금융위원회와 미국 금융당국(FRB, OCC, FDIC, OTS)간 MOU를 체결하였음.

### 금융정부조달시장의 예외적 개방 (제131조제4항, 부속서 13-나 제8절)

※ 금융정부조달이란 정부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의미하는 바, 그 예로는  
① 국민연기금의 운용 ② 국고계좌 개설 등이 있음.

□ 양국은 금융정부조달의 경우 아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 국채 관련 금융서비스(발행, 매수, 분배 등)
- 국고계좌 개설 관련 금융서비스
- 미국의 경우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 자산, 우리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 ※ 상기 3개 분야는 현행 법령하에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참여를 이미 허용하고 있음.

### 우체국보험 건전성 강화 (제13장 서한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 양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 인정하면서 아래 사항에 합의

-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에 따른 세금면제, 정부의 지급보장 등은 현행 제도 유지(제1항)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제2, 3, 8항)
  - 금융위는 ①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②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기초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의견·권고를 제시
  -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조치
  - 한·미 FTA 발효 2년간 유예기간 설정
-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서비스 관련 상품의 특정적 광고를 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요건 적용(제4, 8항)
  - 한·미 FTA 발효 2년간 유예기간 설정
-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 진입은 제한(제5항)하되, 현재 우체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개선은 허용
-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물가상승분 반영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사전에 금융위와 협의 필요

##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제13장 서한 '일정 정부 기관', 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12번째 유보]

- 국책금융기관을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그에 대한 현재의 특별 대우를 유보목록에 기재

※ 대상기관(총13개)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R&C(前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前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상기관중 한·미 FTA 적용이 배제되는 국책금융기관(총 8개)
  -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R&C(前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前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 ※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의 경우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독점적 발행 권한(수출입은행법 제20조제1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동법 동조제2항), ③ 손실금에 대한 정부 보전(동법 제37조) 등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됨.
- 상기관중 한·미 FTA는 적용되나 내국민대우에 대해 유보하여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총 5개)
  -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11-사)

-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와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다음의 조건들에 대해 함의
  - ①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
    - ※ 단, 필요시 미측과 협의 거쳐 연장 가능
  - ② 몰수적이지(confiscatory) 않을 것
  - ③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금지
  - ④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 ⑤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피해야 하며, 경제여건 개선시 점진적 해제

⑥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⑦ 신속하게 공표

-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연계된 지급·송급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미적용
  -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불허
- 경상거래의 경우, IMF상 절차를 따르고 미국과 사전 협의하여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내용은 현행 관련 법령내용 수준으로 반영

### □ WTO 유보 내용 확인

- 양국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유보한 내용은 한·미 FTA상 허용되는 건전성제도 등에 해당하여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부록III-가).

###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영업직원의 수,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함(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1절 1번째 유보).

###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함(부속서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1절 3번째 유보).

■ 한국거래소·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제한

- 미래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함(부속서 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제2절 3번째 유보).

## 참고 한·미 FTA상 한국의 금융서비스 유보목록 개요

〈 Annex III (금융서비스 유보) : 18개 〉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	현재	보험	MA	1)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2) 보험판매 창구 수 등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단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 비율에 대해 제한
2	현재	보험	CBT	"강제적인"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외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 *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3	현재	은행·기타	NT	1) 외국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한국의 상업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10% 초과 보유 가능 2) - 금융위는 소유권 승인여부에 대한 추가적 승인 기준 적용 - 자연인은 지분 10% 초과 보유 불가 - 주요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비금융기관은 지분 4% 초과 보유 불가. 단, 의결권 행사 능력 포기시 10%까지 가능
4	현재	은행·기타	NT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에 대한 개별 인가 요구조건 명시 * 단,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인가 불요
5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용 가능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번호	성격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6	현재	은행·기타	MA	증권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비상장 증권의 예탁자 또는 증권회사 계정 간 증권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 가능
7	현재	은행·기타	MA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만이 증권·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결제 업무 수행 가능
8	현재	은행·기타	CBT	한국 거주자·금융기관·외국기관지점은 한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역외 선물, 옵션, 특정 선도계약 체결 가능
9	현재	은행·기타	NT	1) 외국은행·증권회사 지점의 영업자금 유지 의무 2) 외국 지점은 그 본점과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
10	현재	은행·기타	MA	외국금융기관 지점은 다음 업무 수행 불가 1)신용협동조합 2)상호저축은행 3)여성전문금융회사 4)종합금융회사 5)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6)신용정보회사 7)일반펀드시무관리회사 8)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9)채권평가회사
11	현재	은행·기타	MA	국내에서 일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 가능
12	현재	은행·기타	NT	정부지원기관(산은, 기은,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에 대해 채권보증, 손실 보전, 조세 면제 등 특별대우 부여 가능
13	현재	은행·기타	SMBD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 자 및 이사회 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 국민이어야 함.
14	현재	은행·기타	NT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 보유 금융기관 수 제한 가능
15	현재	은행·기타	MA	원화 현물환거래의 은행간 중개업은 기존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
16	미래	보험	CBT	“감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 구매 의무 충족 여부 결정시 외국에 서 공급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 유보 * 해당 보험이 국내에서 구매될 수 없을 경우, 해외 보험도 고려 가능
17	미래	은행·기타	NT	정부 소유·지배 기관을 민영화 할 경우, 계속적 보증 및 한시적 추가 보증을 채택할 포괄적 권리 유보
18	미래	은행·기타	NT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 유보

※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MA:시장접근, CBT:국경간 무역,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